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66호

▶2020년 제9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재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54호('20.7.21.) 및 제2020 - 58호('20. 8.12.)에 따라 2020년 제9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서류전형 합격자

임용예정 부 서	임용예정 분 야	임용등급	선발예정 인 원	서류전형 합 격 자	비고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안전관리	지방기계운영서기 (일반임기제)	1명	201, 202	

2. 면접 일정 및 장소

면접대상 (응시번호)	면 접 일	등록 시간	면접 시작	등록장소	면접장소	비고
201, 202	'20. 9.16.(수)	15:00	15:30	경남도청 세미나실 (본관지하1층)	경남도청 소회의실1 (본관지하1층)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3.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9. 24.(목)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

(<http://gyeongnam.go.kr>) (시험정보 → 합격자발표)

4. 응시자 주의사항

【공통사항】

-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등록시간까지 등록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채용분야의 면접시작 시간까지 도착하여 등록 하지 않으면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정해진 시간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055-211-3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이 사정에 의해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개별 통보합니다.

【코로나 19 예방 조치 이행 협조 및 당부사항】

- 면접시험일까지 중국 등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
-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원서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국내외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실시
- * **신 고 처 :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 경상남도 인사과(055-211-3523)**
-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면접시험 관련 사전 안내

- ① (출입금지)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 ②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단순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후순위 면접시험 및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 ③ (응시자 및 관리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 씻기 등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 개인 음용수 준비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확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감염병의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균자와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p>※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2020. 3. 4. 시행)</p>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유심히 살펴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